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01.01 개정 2013.05.01
전부개정 2017.12.06 개정 2018.10.19
 개정 2019.06.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축법”이라 한다)과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번지 국제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사업) ①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학교기업의 운영지원 및 회계의 관리
7.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8.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9.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10. 대학의 교·직원 또는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협력연구소와 대학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1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3.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개정 2018.10.19.>
1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15. 연구, 학술진흥 및 산학협력 제반 업무<개정 2018.10.19.>
16. 삭제 <2018.10.19.>
1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관련부서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관련 부서 및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단장 및 부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의 임명으로 임기가 조정될 수도 있다.

③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실장·센터장·과장·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실장·센터장·과장·팀장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8조 삭제 <2019.06.13.>

제9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부설기관과 사업단, 센터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과 사업단,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직원의 업무는 단장이 별도로 정하고,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06.13>

③ 삭제 <2019.06.13>

제11조(산학협력전담교수, 연구원 및 직원의 임용 등)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전담교수, 연구원 및 직원(상근 및 비상근)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산학협력전담교수, 연구원 및 직원(상근 및 비상근)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전담교수, 연구원 및 직원(상근 및 비상근)으로 하여금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11조에 규정한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설립당시 출연금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료
7. 이자 수입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재정지원사업의 간접경비 등)

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성과급
4. 학교기업의 운영비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8. 연구 활성화 및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5조의2(성과급)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성과급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익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③ 성과급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지급한다.

제16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7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④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19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03월 01일에 시작하여 익년 02월 28일에 종료한다.

제21조(회계처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제22조(결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이 결산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총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⅓ 이상의 동의로 본 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이 경우 본 대학교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대학의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제29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공고의 방법)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보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